

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4. . . .

제출자 : 영주시장

1. 제안이유

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일부를 금융분야의 전문가로 교체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, 금고선정 및 자금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자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3명중 1명을 금융분야의 전문가로 교체함
(안 제4조)

3. 자치법규안 : 붙임

4. 신구대비표 : 붙임

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위원은 영주시의회의원 2명, 대학교수·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명을 시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대비표

【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.</p> <p>③위원은 산업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원 2명, 금융전문가 2명으로 시장이 위촉한다.</p>	<p>제4조(구성) ①----- -----</p> <p>②----- -----</p> <p>③위원은 영주시의회의원 2명, 대학교수·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.</p>